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20. 2. 11. / 총4매(본문2, 참고2)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·과장 김인, 사무관 이형주 ·☎ (044) 201-4600, 4603
보 도 일 시		2020년 2월 1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11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철도정비기지·승강장에도 ‘영상기록장치’ 확대 설치

-기존 철도차량→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...안심철도 구현 기대

-노면전차 안전우려 행위 사전신고, 철도종사자 교육자격기준 강화

- 기존 철도차량에 적용되던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되어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, 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,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,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.
 - 영상기록장치는 여객 승강장, 철도차량정비기지, 변전소, 국가중요 시설에 속하는 교량, 터널까지 설치될 예정이다.
-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전한 운행 확보를 위해 기존 철도보호지구 행위와 다른 사전신고 행위를 규정할 예정이다.
 -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궤도 끝에서부터 10~30미터 사이에서는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, 높이 10미터 이상 건설기계·인공구조물 설치,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상 위험물 취급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할 시·도지사에 사전신고를 해야만 한다.

□ 철도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차량운전면허 관련 교육기준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개정된다.

○ 교육기관별 교육시간 차이로 인한 철도차량운전면허 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이론교육실무수습의 적정 교육시간이 정해진다.

○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도 강화된다. 기사기술사 등 관련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할 뿐만 아니라 실무경력을 우대해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다.

* (철도차량정비기술자)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,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

□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0.2.12.~2020.3.23. 까지이며,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”에서 볼 수 있다.

○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□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“철도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”한다면서,

○ “입법예고를 통하여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보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 안전정책과 이형주 사무관(☎ 044-201-460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 등 규정

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하여야 하는 철도시설의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의 세부기준 마련

- (설치 대상) 입법취지·안전확보 필요성을 고려 승강장, 고속차량, 차량정비기지, 변전소·분기기 등에 설치(령 안 제30조제2항)
- (설치 기준·방법) 개정안 취지를 고려하여 영상기록장치는 차량·시설 운행상황 등이 촬영 가능하게 설치(규칙 안 제76조의2)
- (과태료 기준) 타 사례 등을 고려 영상기록장치 미설치·미운영에 대한 기준 신설* (령 안 별표6, 1회 125만원, 2회 250만원, 3회 500만원)

* 現 철도운영자등에게 부과하는 1,000만원 이하 다른 과태료 기준과 유사 수준

2. 노면전차 인근 안전 저해행위 규정

노면전차 운행 관련 국토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 신고 대상인 안전 운행 저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

- (우려행위) 법 개정안 취지 및 노면전차 특성을 고려하여 굴착, 인공 구조물 설치 및 위험물 저장·적재 등 신고대상 규정(령 안 제48조의2)
 - (굴착·인공구조물)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, 높이 10미터 이상 건설 기계·인공구조물 설치 행위 등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
 - (위험물) 도로 위 주유소·충전소 등에서의 위험물 저장·전시 행위 등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상 위험물* 취급행위도 신고대상 규정

*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 및 2항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

3. 철도차량 운전면허 관련

- (이론교육) 통일적 교육 기준 부재로 교육훈련기관 별 이론교육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운전면허의 질적 저하 우려

☞ 운전면허종별(6개), 취득대상자별에 따른 이론교육 시간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부여(규칙 안 제20조제3항 별표7)

* (이론교육 세부기준) 일반응시자(디젤·제1종 340h, 제2종 270h, 철도장비 170h, 노면전차 200h), 운전면허소지자 등 경력자(교육과정·종별에 따라 30~250h)

- (기능시험) 사고 초기 운전업무종사자의 비상 조치가 중요하나 일부 운전면허 기능시험 중 비상시 조치 관련 시험 항목 부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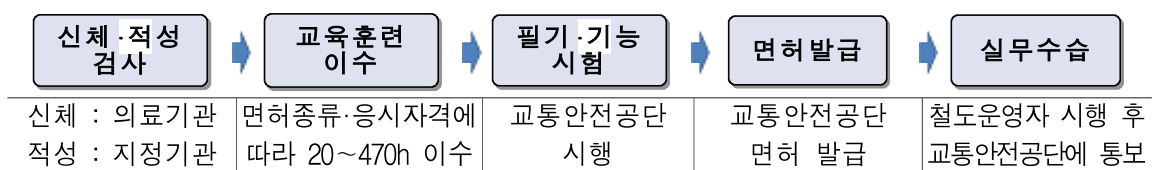
☞ 철도차량 운전면허종별(예:제2종 → 제1종) 상향 기능시험 등 에서 누락된 '비상시 조치' 시험항목 추가(규칙 안 제24조제2항 별표10)

- (실무수습) 철도운영자 자율적 실무수습 시행으로 기관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사의 역량 차이 발생 우려

☞ 실무수습을 신규·경력자로 구분하고 각 면허종별 세부기준* 마련

* (제2종 신규) 400시간 이상 또는 6,000km / (경력) 200시간 이상 또는 3,000km

< 現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절차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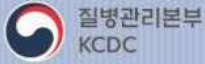
4. 철도차량 정비기술자 관련

- (국가기술자격자 우대)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기준에 국가기술 자격증 미보유자의 점수 하향 조정*(령 안 별표1의2)

* (국가기술자격증 미보유자 경력점수) 현행 5점/년 → 개정 후 3점/년

- (학력배점 조정) 세부 인정 기준 상 학력점수 하향*(령 안 별표1의2)

* 경력점수 비중(56%→68%), 학력점수(44%→32%)로 조정

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

감염병 예방 수칙



손바닥, 손톱 밑
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!



기침할 땐
옷소매로 가리기!



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
반드시 마스크 착용
(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)



선별진료소* (의료기관) 방문 시
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

*선별진료소 안내: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,
관할보건소 또는 지역번호+120, 1339 문의



감염병이 의심될 땐
관할보건소 또는 1339,
지역번호+120 상담

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



동물 접촉 금지



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



발열, 호흡기증상자(기침, 인후통 등)
접촉 금지



· 기침시 마스크 착용
· 손씻기, 기침예절 등
개인위생 수칙 준수



·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
·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
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,
지역번호+120 상담

*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: 해외감염병 NOW 에서!

발행일 : 2020.1.29